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총리 (인사혁신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우수 인재의 공직 채용 기회 확대를 위하여 경력경쟁채용 시 기존 경력에서 제외됐던 자격증 취득 이전 경력을 일부 인정하고, 특정 분야는 경력 필요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경력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자격증 활용 채용시 경력 인정범위 확대(제7조의2제2항, 별표2의5)

- 기존 경력 산정시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경우 자격증 취득 전 경력도 50퍼센트 인정하고, 경력기준 단축 시 인사처 협의절차 생략

나. 연구·근무경력 활용 채용시 경력기준 단축 근거 마련(제7조의2 제3항)

- 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무원 외 다른 근무경력자에 대해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필요 경력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함

다. 경채·전직 응시요건 및 가산 대상 자격증 현행화 (별표2의5, 별표7)

- 임업연구직렬(임업·산림조경직류), 환경연구직렬(환경직류)의 가산 대상 자격증에 ‘산림기능장’을 추가함
- 공업연구직렬(전자·정보통신직류)의 경채·전직을 위한 자격증 및

가산대상 자격증 중에서 ‘전자계산기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를 ‘컴퓨터시스템기사’로 변경함

- 자격증 명칭의 단순 변경은 동일한 자격증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재입법예고(2026. 6. 2. ~ 6. 15.)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를 “곤란한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경력이 3년 이상(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관이나 지도관의 임용예정 직위 상당 경력은 3급의 경우를 준용한다)이어야”를 “경력(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관이나 지도관의 임용예정 직위 상당 경력은 3급의 경우를 준용하다)이 3년 이상(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직무분야 공무원 외 다른 근무경력자에 대해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이어야”로 한다.

별표 2의5 제1호의 공업연구의 전자의 연구사란 중 “전자계산기, 반도체 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을 “반도체설계, 컴퓨터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란의 정보통신의 연구사란 중 “전자계산기조직응용”을 “컴퓨터시스템”으로 한다.

별표 2의5 제1호의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1. 직류별로 연구관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가진 경우 연구사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가진 것으로 본다.

2. 경력경쟁채용등의 경우 기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3년, 그 밖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안의 기간(년) 이상 관련 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3.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경쟁채용등 대상 및 전직시험 면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4. 제2호에 따른 경력을 계산할 때에는 자격증 취득 전의 경력은 50퍼센트를 인정한다.

5.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의 개정으로 위 표에서 정한 자격증이 하나의 자격증으로 통합되거나 둘 이상의 자격증으로 분할되는 경우 또는 그 명칭이 단순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자격증도 경력경쟁채용등 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별표2의5 제2호의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1. 직류별로 지도관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가진 경우 지도사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가진 것으로 본다.

2. 경력경쟁채용등의 경우 기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3년, 그 밖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안의 기간(년) 이상 관련 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3.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경쟁채용등 대상 및 전직시험 면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4. 제2호에 따른 경력을 계산할 때에는 자격증 소지 전의 경력은 50퍼센트를 인정한다.

5.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의 개정으로 위 표에서 정한 자격증이 하나의 자격증으로 통합되거나 둘 이상의 자격증으로 분할되는 경우 또는 그 명칭이 단순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자격증도 경력경쟁채용등 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별표 7 제1호의 공업 연구의 전자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란 중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을 “반도체설계, 컴퓨터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란의 정보통신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란 중 “전자계산기조직응용”을 “컴퓨터시스템”으로 하며, 같은 호 임업 연구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술사: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능장: 산림
기사: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산업기사: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별표 7 제1호의 환경 연구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술사: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

상예보, 광해방지 기능장: 산림 기사: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 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 경, 기상, 광해방지 산업기사: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 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

별표 7 제1호의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폐지된 자격증이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2.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의 개정으로 위 표에서 정한 자격증이 하나의 자격증으로 통합되거나 둘 이상의 자격증으로 분할되는 경우 또는 그 명칭이 단순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자격증도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별표 7 제2호의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1. 폐지된 자격증이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2.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의 개정으로 위 표에서 정한 자격증이 하나의 자격증으로 통합되거나 둘 이상의 자격증으로 분할되는 경우 또는 그 명칭이 단순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자격증도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 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별표2의5 제1호의 비고 제2호 및 제4호, 별표2의5 제2호의 비고 제2호 및 제4호 : 2026년 8월 1일
2. 별표7 : 2027년 1월 1일

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의2(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① (생 략)		제7조의2(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① (현행과 같음)		
② 소속 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용예정 직무의 특수성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u>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u> 별표 2의5에 규정된 경력 기준을 단축할 수 있으며, 임용예정 직무와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응시하게 할 수 있다.		② ----- ----- ----- ----- -- <u>곤란한 경우에는</u> ----- ----- ----- ----- ----- ----- ----- -----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③ 법 제28조제2항제3호 및 이영 제7조에 따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공무원임용시험령」(이하 “시험령”이라 한다) 제27조제3항에 따라 임용예정 직렬 또는 직위의 업무 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시험령 별표 9의		③ ----- ----- ----- ----- ----- ----- ----- ----- -----		

구분에 따라 임용예정 계급 상당 경력이 3년 이상(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관이나 지도관의 임용예정 직위 상당 경력은 3급의 경우를 준용한다)이어야 하며, 시험령 별표 9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 직급은 개별적으로 소속 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시험령 별표 9의 임용예정 계급의 “3급·4급·5급”은 “연구관·지도관”으로, “6급·7급”은 “연구사·지도사”로 본다.

④ ~ ⑥ (생략)

 -- 경력(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관이나 지도관의 임용예정 직위 상당 경력은 3급의 경우를 준용한다)이 3년 이상(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직무분야 공무원 외 다른 근무경력자에 대해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이어야 ----. -----

 -----.

④ ~ ⑥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인사혁신처 균형인사과	
연 락 처	(044) 201 - 8297